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 벌칙 강화 등〉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0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	4
2.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9
3. 국외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12
4.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14
5.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16
6. 비밀유지의무 관련 민·형사상 면책	18
7.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요건 변경 및 벌칙 강화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통제할 근거가 부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더라도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 마.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자.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

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고 함)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기업등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략) ⑥ <u>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⑦ (생략) <u><신설></u>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u>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대상기관¹⁾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2)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기관이 동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판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³⁾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기술보호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보호에 취약한 상황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전략기술 판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⁴⁾,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첨단전략기술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등에게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다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불법수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기술을 숨기는 기업등에 대해 판정신청 통지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2019년 동 국가핵심기술 판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핵심기술인 조선분야 기술도면이 프랑스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음.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의 등록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이 관련 기술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

현행	개정안
	<u>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3. <u>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u>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조의2 (생략)	<u>제9조의4</u>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수출심사 이력이 있는 대상기관을 목록화하고 있을 뿐 각 기업별 보유기술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기업등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기술보유기관이 대상기관에 부여되는 기술보호조치나 실태조사 등의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보유사실을 숨기는 경우,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술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기술보호조치 및 실태조사 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기술유출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등은 등록 내용 및 방법 등을 대상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압류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의2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⁶⁾

그러나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사후적으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관련 설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기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당 물품의

5)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침해행위의 물건폐기 혹은 설비제거 사례는 없었음.

시장 내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침해물품 압류조치는 예상되는 침해행위를 잠정적으로나마 중단시킬 수 있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압류품을 통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외의 유사 입법례로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DTSA)」에서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방적 민사상 압류조항을 두고 있고,⁷⁾ 유럽연합(EU)은 「영업비밀보호지침(2016)」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역내 시장에 유통·유통되지 못하도록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다만, 법무부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로서, 개정안과 같이 금지청구와 관련된 보전처분⁹⁾으로서 ‘압류’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미국 입법례와 유사하게 압류조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민사적 구제임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함¹⁰⁾.

7)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김윤정, 법학논고, 2020; 70:305-335

8)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3.6.

9) 보전처분이란 소송이 확정판결 전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명하는 처분을 의미함. 법무부는 개정안의 압류규정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봄.

10)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나, 개정안은 침해행위 금지청구

3. 국외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금지행위로 적용하고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4(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하고¹¹⁾

와 관련한 보전처분이므로 양자의 개념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미국은 민사상 압류(CIVIL SEIZURE)의 요건, 절차, 보상 규정 등을 법률에 상세히 정하고 있음.

【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2. FEDERAL JURISDICTION FOR THEFT OF TRADE SECRETS

(a) (생략)

(b) Private Civil Actions -

(1) (생략)

(2) CIVIL SEIZURE(민사상 압류)

(A) In General. -

(i) Application. - (이하 생략)

(ii) Requirements for issuing order - The court may not grant an application under clause (i) unless the court finds that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that -

(I) ~ (VIII) (민사상 압류의 요건 규정)

(B) ~ (F) (민사상 압류의 절차 등 규정)

(3) REMEDIES (민사상 압류에 대한 보상 규정)

11)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¹²⁾

대한민국 형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병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외에서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생략)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 8. (생략)

12)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⑧ (생략)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13)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대상기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관리 현황,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또는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에 관하여 실태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 기술유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음.

다만, 외국자본이 국내에 국가핵심기술과 무관한 업종 또는 분야의 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후 본국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술유출 방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으나, 현행은 ‘대상기관’¹⁵⁾이 아닌 기업등에 대해서는 조사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3.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기술유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국가핵심기술 등 침해신고가 있을 시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을 신속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면,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여러 기술유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위협 및 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5.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국회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건 적발건수를 제공받아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등은 알 수 없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기술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무부의 협조로 산업기술 해외유출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제공받아 국회에 보고한다면 국회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논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 현황은 대부분 정보수사기관이 조사·수사 중인 사항이며,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확정되므로 산업부장관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유출·절취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매년 2회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도록¹⁶⁾ 규정하고 있음.

16)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관한 보고)(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4. REPORT ON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ABROAD)는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매년 2차례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지적재산담당 상무부차관, 미국특허청장 및 기타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절취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고, 법무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1건의 보고서만 확인됨

6. 비밀유지의무 관련 민·형사상 면책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업 기술 침해행위 혐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알리거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을 하는 때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비밀유지의무)(생략)	제34조(비밀유지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직접 하는 경우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의 비공개 진술

현행법은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¹⁷⁾.

17)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

다만, 불가피하게 침해행위 혐의를 제보 또는 신고하거나 소송 등의 절차에서 비공개 진술(봉인된 상태로 제출된 소장이나 관련 문서를 통해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 등)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지 않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의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한다면, 내부고발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침해행위 또는 그 혐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보하거나 재판상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 기술보호를 한층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임.

유럽연합은 지침을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¹⁸⁾,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의 법률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직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18)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사용·공개에 대한 EU지침 제2016/934호」

미국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연방정부, 주 정부 또는 법원에 위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면책되는 목적이나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¹⁹⁾

다만, 법무부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형사상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책하는 국내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²⁰⁾,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제1항²¹⁾에 따른 침해신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는

19)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18 U.S.C. §1833)

DTSA는 내부고발자가 위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영업비밀을 연방기관, 주 정부, 법원에 공개한 경우에는 DTSA 또는 주(州)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는 영업비밀 공개가 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관리 혹은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경우나 ② 오로지 법 위반 혐의를 보고·조사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공개가 소송이나 기타 법적절차를 위해 제출된 공소장이나 다른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문서가 봉인되어 제출된 경우에 해당된다[18 U.S.C. §1833(b)].

보복금지 관련 소송에서 영업비밀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위법행위의 혐의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해 소송을 제기한 자는 관련 영업비밀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공개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 절차에서도 관련 정보의 사용이 허용된다[18 U.S.C §1833(b)(2)(A)(B)].

고용주는 영업비밀 또는 기타 기밀정보의 사용과 관련해 직원(여기에는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컨설턴트도 포함됨)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나 합의서에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18 U.S.C §1833(b)(3)] 영업비밀과 관련된 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사용자 측에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변호사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법률과의 해석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838조에 따라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은 주법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된다[18 U.S.C §1833(b)].

*출처: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김윤정, 법학논고, 2020; 70:305-335

20) 법무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6조제1항에서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특정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1항에서도 ‘자수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임.

21)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

침해신고의 주체를 ‘대상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서 그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 등을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²²⁾

7.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요건 변경 및 벌칙 강화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요건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목적)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고의)로 변경하고,

또한, 해외유출범죄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특정 해외유출범죄(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때 벌금형은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15억,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상한액 내에

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2)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사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법무부 의견제시 내용, ‘제411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4년1월8일) 회의록’

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 할 목적</u> 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u>벌금</u> 을 병과한다.	제36조(벌칙) ① ----- ----- <u>사용될 것임을 알면</u> <u>서도</u> ----- ----- --- <u>5년</u> ----- ----- <u>벌금(위반행</u> <u>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u> <u>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u> <u>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u> <u>이하의 벌금)</u> -----.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u>사용되게 할 목적으로</u>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u>1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u>벌금</u> 에 처한다.	② ----- - <u>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u> ----- ----- ----- ----- ----- <u>20년</u> ----- <u>20억</u> <u>원</u> ----- <u>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u> <u>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u> <u>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u> <u>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u> <u>금)</u>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²³⁾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이하 “해외유출범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²⁴⁾

다만,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의 처벌요건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²⁵⁾

이에, 개정안은 처벌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완화하여 처벌가능한 산업기술 해외유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3)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4) 제14조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6조제3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상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36조제2항).

25) 국가핵심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했는지 입증되지 업무상 배임만 인정한 판례가 있음(2016고단6150, 2018.1.12.선고)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2023년 1월 동 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의무 보유자의 산업기술 유출 및 적법한 승인·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인수·합병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변경한 바 있음²⁶⁾.

한편, 이러한 해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유사 입법례와 현행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산업기술 침해행위 요건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 5. (생략)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 8. (생략)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 8. (현행과 같음)

국내외 유사 입법례 형량 비교

관련 법률	해외유출대상	법정형
첨단전략산업법	첨단전략기술	5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경제스파이법(美)	기술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불 이하 벌금 (법인 1,000만불)
부정경쟁방지법(日)	기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 벌금 (법인 10억엔)

현행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국내의 「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입법례와 징역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나 벌금형의 상한은 외국보다 2~4배 낮은 수준임.

통상의 기술유출범죄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벌금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20억원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범죄수익

이 2억원일 경우와 10억원일 경우 각각의 벌금이 20억원으로 동일하여²⁷⁾, 범죄수익이 5배 차이나는데 비해 벌금액은 동일하게 되므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벌금형 산정방식과 상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징역형의 상향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하고 기존에는 없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²⁸⁾,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시 각각 기본 2~6년, 3~7년, 가중 시 최고 10년, 12년으로 현행 법상의 15년 또는 개정안의 20년 이하 징역형보다는 낮은 수준임.

문 의 처
02)6788-5461

27) 범죄수익이 2억원인 경우 10배를 적용받아 벌금은 20억원이며, 범죄수익이 10억원인 경우 20억원 한도 내에서 2배의 적용을 받아 20억원의 벌금을 처하게 됨.

28) 종전에는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범죄에 대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권고형량인 기본 1년~ 3년 6개월(감경·가중시 10개월~6년)을 적용하였음.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양형기준> ('24.7.1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8월	6월~1년 6개월	1년~3년 6개월
2	국내침해	8월~2년	1년~4년	2년 6개월~6년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3년 6개월	2년~6년	4년~10년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5년	3년~7년	5년~12년